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의 자유와 법적, 윤리적 한계

김 경 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몰래카메라는 통상 취재대상이 자신의 노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촬영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피침해이익(彼侵害利益)의 성질로 볼 때, 허락된 사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동의한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취재보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김경호, 2003). 이러한 몰래카메라가 동원된 방송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연출된 프로그램보다 훨씬 생생한 현장감과 긴장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증가와 함께 몰래카메라의 사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송의 위험성과 윤리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Boylan, 1997; Lidsky, 1998; Logan, 1998). 첫째, 카메라 기술의 발달이다.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기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근래의 디지털 기술은 직경 1mm 정도의 초소형 카메라까지도 가능케 하여 취재대상의 눈에 띄지 않게 촬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해졌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유용성은 취재과정에서 몰래카메라와 같은 보다 은밀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언론인들을 자극하고 있다(Kim, 2001; Walsh et al., 1996). 둘째, 경쟁적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시청률 싸움 또한 몰래카메라 사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매체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는 분산되어가고 있고, 방송사의 재원인 광고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몰래카메라가 적격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시청률 전쟁에서 생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감시견(watchdog)의 역할과 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즉 취재보도를 통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감시,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언론학보』에 게재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을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비판하는 것이 공적 존재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공중에 노출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은밀한 취재방법이 부득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Stewart, 1975)과,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Walsh, et al, 1996)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취재방법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반사회적 범죄행위들을 공중에 노출시키고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취재방식이 부득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Nick, 1999). 즉 공공의 이슈에 대한 제한 받지 않는 건전하고 공개된 토론을 위해서 취재의 자유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¹⁾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른 여타의 취재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감추어진 중요한 공적 이슈들을 공공의 관심사로 끌어내 왔고, 그 이슈에 대한 공개된 토론의 장이 되어 왔음을 자신들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다.

반면, 후자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원칙은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언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²⁾

한마디로 취재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론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한을 누리는 주체이지만, 이 보장이 무제한적일 수는 없으며, 취재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까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³⁾ 이들은 또한 몰래카메라의 사용은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취재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몰래카메라 사용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재보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또한 취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두 법익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인격권 침해

1) 미국의 몰래카메라 사례와 프라이버시 침해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명예권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된 인격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1890년 당시 변호사였던 사무엘 워렌(Samuel D. Warren)과 루이스 브랜디스(Louis D. Brandeis)가 '하버드 리뷰'에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⁴⁾ 그로부터 40년 뒤 연

1)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2) Branzburg v. Hayes, 408 U.S. 665, 682 (1972); Shulman v. Group W Production, Inc., 995 P.2d 467 (Cal. 1998).

3) Cohen v. Cowles Media Co., 501 U.S. 663 (1991).

4) Warren & Brandeis (1890).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Review 193.

방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브랜드스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정의하면서 법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이 발전하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에는 언론의 공격적인 취재행위가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렌과 브랜드스가 논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해왔으며, 이로 인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바로 이러한 언론의 취재행위가 프라이버시를 법적 권리로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언론의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이어진 미국의 첫 번째 사례로 '다이트맨 대 타임'(Dietmann v. Time, Inc.)을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라이프(Life) 잡지의 기자들이 무면허 의료기술 행위를 탐사보도하면서 가짜 환자로 위장, 다이트맨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취하여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⁵⁾ 판결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다이트맨의 허락 없이 그의 사무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취재 행위가 뉴스의 제작과 보도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취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몰래카메라와 같은 비밀스런 도구의 사용이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법리는 이후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왔다.

1999년 '샌더스 대 ABC'(Sanders v. ABC, Inc.) 사례에서 ABC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잠입취재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⁶⁾ 전화로 점괘를 보는 텔레사이직(tele-psychic)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위해 ABC 여기자가 직원으로 위장 취업했고, 자신의 모자와 브래지어 속에 감춘 고성능 마이크와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원고인 샌더스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의 행위를 녹화했다.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촬영된 내용을 방영했고, 샌더스는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낮은 정도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하고, 몰래카메라로 무장한 잠입취재기자에 의해 작업장에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닐지라도 프라이버시는 합법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적인 공간에 견주어 완전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여 그곳에서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무용(無用)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업장을 침범한 사람의 신분과 침범의 성격, 동기와 의도 등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몰래카메라 사용이 다시 한번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푸드라이온 대 ABC'(Food Lion v. Capital Cities/ABC, Inc.) 사례는 푸드라이온 슈퍼마켓에서 표백제를 사용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재포

5) 449 F.2d 245 (9th Cir. 1971).

6) 978 P.2d 67 (Cal. 1999)

장, 판매한다는 제보를 취재보도하면서 발생한 경우이다.⁷⁾

ABC 소속 두 기자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점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용,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몰래 녹화했다. '프라임타임 라이브'는 취재된 내용을 방송했고, 푸드라이온은 기자와 PD를 포함한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충성의무 계약의 불이행 (breach of duty of loyalty)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푸드라이온사의 동의가 거짓진술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 수 없으나, 언론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허용된 출입의 범위를 넘거나 그 동의를 악용했을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가 사용된 작업장은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고기 재포장 행위를 촬영한 것은 기자들에게 허용된 출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위장 취업한 기자들의 작업장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은 고용주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입의 허가는 원천무효가 되며,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들과는 달리 몰래카메라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데즈닉 대 ABC' (Desnick v. ABC) 사례는 ABC '프라임타임 라이브' (PrimeTime Live) 기자들이 데즈닉 안과병원 (Desnick Eye Center)의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을 취재보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⁸⁾ 기자들은 안과

본원을 방문하여 공정한 보도를 약속하고 촬영 협조를 얻었으나, 약속과는 달리 몰래카메라를 지닌 위장환자를 본원으로 보내 수술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문제가 된 병원은 안과질환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며, 환자로 위장 촬영한 것이라도 의료행위는 사적인 것이 아닌 환자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취재보도에서 데즈닉의 사적인 문제나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로 위장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이 데즈닉의 사적 소유권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2년 '메디칼 랩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대 ABC' (Medical Lab. Management Consultants v. ABC) 사례도 언론사가 승소한 경우이다.⁹⁾ 이 사건은 '프라임타임 라이브' 기자들이 메디칼 랩에서의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분석 내용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취재하면서 발생하였다. 취재기자들은 투자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랩을 방문하여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설립자인 대바라지와 랩 시설을 촬영했다. 또한 랩 직원들의 출입을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촬영했고, 이렇게 수집된 비디오 클립을 방영했다. 메디칼 랩은 ABC를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기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바라지가 자신의 의지로 기자들을 랩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부대시설로 안내한

7) 887 F.Supp. 811 (M.D.N.C. 1995), 194 F.3d 505 (4th Cir. 1999).

8) 44 F.3d 1345 (7th Cir. 1995).

9) 306 F.3d 806 (9th Cir. 2002).

것은 자신이 랩을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라이타임 라이브'의 취재보도 내용에서 대바라지의 사적인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고, 대화의 대부분이 랩 운영과 자궁경부세포진검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법이 보호하고자하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한국의 몰래카메라 사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심층 탐사프로그램, 뉴스보도, 오락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의 장르와 상관없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판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그다지 많다. <표1>의 사례는 언론사의 위법

<표1> 원고 승소 사례

원 고	피 고	판 결 요 지	사 건 번 호
김○○ 외	KBS 제이알엔(외주제작사)	방송사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권자 내지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이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박○○ 외	김종학 프로덕션 MBC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백○○	MBC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을 가지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초상 등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정○○	KBS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김○○	MBC	피고 방송사는 원고가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인터뷰를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최○○	SBS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성○○	MBC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성이 인정돼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고, <표2>의 사례는 반대로 언론의 취재보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사례 1. '최○○ 대 SBS'

'최○○ 대 SBS' 사례는 대학 내에서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경찰이 현직 교수를 체포하는 현장을 동행취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다.¹⁰⁾

당시 SBS 기자는 레슨을 받고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 교수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촬영했고, 더 나아가 연습실 내부도 무단으로 취재했다. 이렇게 취재된 내용은 「8시 뉴스」를 통해 “서울 유명 대학의 현직 바이올린 교수가 버젓이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 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불법 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취재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습실에서의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 속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있듯이 취재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연습실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출입이 금지되고 그 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

했다. 현직 대학교수가 교내에서 불법으로 과외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취재·보도의 공익이 인정되지만, 해당 연습실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으로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사례 2. '성○○ 대 MBC'

'성○○ 대 MBC' 사례는 「시사매거진 2580」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문화를 취재보도하면서 사전 동의와 달리 보도하여 발생한 경우이다.¹¹⁾ 기자들은 촬영 협조를 구하면서 공정하고 긍정적인 보도를 약속했으나, 약속과는 달리 음주장면과 나이트 클럽 화장실 등에서의 대화를 무단으로 촬영했고, 퇴폐유흥에 물든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원고 성○○ 등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TV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MBC의 취재보도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원심을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상 원고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

10)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그 촬영 후에라도 원고들로부터 그 방영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례 3. ‘김○○ 대 MBC’

‘김○○ 대 MBC’ 사례에서도 성○○ 사례와 비슷하게 인터뷰 허락의 내용과 달리 원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음성도 변조하지 않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다.¹²⁾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프로그램은 암 말기 환자 가족에게 중증 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설명하며,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촬영 동의를 얻었다. MBC는 촬영된 내용을 “생명인가? 죽을 권리인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고, 익명성 보장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아버지 김○○의 건강상태나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병원 홍보담당 직원과 담당의사가 중증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취지의 방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방송사의 급한 사정, 익명성 보장 등을 언급하며 재차 인터뷰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자 마지못해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소속의 방송관계자 등 직원들은 원고가 익명성 보장 등을 조건으로 인터뷰

를 허락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얼굴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음성을 변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익명성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터뷰 당시 설명하였던 방송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리포터의 설명을 통하여 마치 원고의 아버지 김○○이 죽음에 임박한 말기 암 환자로서 소극적 안락사의 대상인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다.

사례 4. ‘정○○ 대 KBS’

‘정○○ 대 KBS’ 사례는 「KBS 저널」이 불법 성형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원고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주기로 하였으나, 눈 윗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아래 부분은 그대로 방송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이다.¹³⁾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KBS 저널 프로그램에 자신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도 원고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단16980 판결.

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취재 방송함에 있어 가명을 사용하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이크처리 등의 화면처리방법으로 원고의 영상을 당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았어야 하고 실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실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코 부분 이외에도 그 아래 부분을 선명하게 노출하여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사례 5. ‘김○○ 대 KBS’

‘김○○ 대 KBS’ 사례는 대법원의 판결로 외주제작사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KBS는 몰래카메라의 위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이다.¹⁴⁾

KBS는 「병원 24시」 프로그램에서 ‘1,000g 아가들의 전쟁 - 세쌍둥이 미숙아’라는 제목으로 세쌍둥이 미숙아와 그들의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방영했다. 원고는 세쌍둥이를 출산했으나,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원고는 살아남은 아이와 자신에 대한 촬영은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방영하였다. 1심 재판부는 촬영과정에서 외주제작사가 취재대상으로부터 촬영 동의

를 구했는지 여부를 방송사가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촬영을 제지하는 등의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KBS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 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KBS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사례 6. ‘백○○ 대 MBC’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남산의 두 얼굴’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얼굴 및 음성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송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당했으며, 원고를 폭주족으로 보이도록 허위로 연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방송사가 방송을 내보내기 전 허위작출 여부 확인과 초상권 침해 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피고 방송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¹⁵⁾

14)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184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주제작사 소속 PD에 대해 MBC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MBC는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아무런 조치나 확인 없이 원고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방송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그 촬영이 어느 방송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음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촬영사실을 알고도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초상의 사용 등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제작에 관한 모든 책임은 외주제작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은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방송사의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사례 7.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사례는 김종학 프로덕션이 제작해 문화방송에 공급, 방영한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 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영분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이 공개돼 초상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¹⁶⁾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표2〉 피고(언론사) 승소 사례

원 고	피 고	판 결 요 지	사 건 번 호
○○○○ 코리아	SBS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남○○	MBC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
정○○	MBC	문제된 프로그램은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하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연주 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 바, 피고 김종학 프로덕션은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했고, 피고 문화방송은 위와 같이 촬영된 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라며,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정OO 대 MBC’는 언론사가 승소한 사례인데, TV 뉴스 앵커를 지낸 모 방송국 기자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기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경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장면이 몰래 촬영되어 보도된 경우이다.¹⁷⁾ 「MBC 뉴스테스크」 ‘카메라 출동’이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일어나는 취중백태를 보도하는 중에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기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항의하는 과정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없이 내보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점,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했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

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주요 방송국의 앵커를 지낸 원고는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피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남OO 대 MBC’는 취재보도 된 내용이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¹⁸⁾ ‘OOOO코리아 대 SBS’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이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진실된 공익적 내용을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¹⁹⁾

3. 몰래카메라 사용과 언론윤리의 문제

법원 판결에서 보여진 몰래카메라의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의 윤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17)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있음을 의미한다. 비판의 핵심은 카메라를 감추고 취재대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몰래카메라가 동원된 취재에 신분의 위장이나 취재 목적의 속임, 정보원과의 약속 파기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 모두가 전문직 종사자인 언론인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김옥조, 2004). 또한 모자이크처리와 음성변조 등을 통해 신분의 익명 처리를 약속하고 촬영에 임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방송하는 등의 행동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시사 범죄 고발프로그램 등에서 취재원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연출하는 식의 장면을 구성하기도 하고, 취재대상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심지어는 여학생들을 가출한 것처럼 위장시켜 인신 매매범을 유도한 사례도 있다(한국언론재단, 2000).

윤리강령의 위반도 이러한 비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와 언론인 협회 등의 단체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인이 취해야 할 행동강령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용인될 수 있는 취재활동과 금지해야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취재보도의 지침으로 설정하고 그에 준하는 활동을 소속 언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심의규정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2조 역시 비밀촬영 등 위법적인 취재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전문 언론인 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도 정상적인 취재방법으로 중요한 정보

를 습득할 수 없을 경우에만 몰래카메라와 잠입취재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KBS는 방송강령 제35항에서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MBC는 몰래카메라 준칙을 따로 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보도의 경우, 뉴스의 가치가 침해되는 프라이버시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 취재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SBS 역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활동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취재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며,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더 나아가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윤리강령이나 제작 지침이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취재보도 현장에서 윤리강령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몰래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어서 윤리강령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소속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언론인이 다수이고, 강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윤리강령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준다. 또한 언론인의 30퍼센트 정도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한 연구 결과도 강령의 구속력 부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취재 현장에서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야만 문제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박한 순간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따져가며 취재를 해야

하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 윤리강령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언적인 명분에 지나지 않고, 언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시카고 대학교 리차드 엡스타인(2000) 교수의 지적처럼 언론인들이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보도의 진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청률을 의식한 부분의 진실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맥을 같이한다.

4. 몰래카메라 사용의 허용범위

그렇다면,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판례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²⁰⁾

첫째, 취재 대상이나 내용이 지대한 공적 관심 사이어야 한다. 몰래카메라는 그 자체로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촬영내용이 반드시 중요한 공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공익에 관한 사항이 아닌 보도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국민 이익과 직결된 경우이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그 목적이거나 내용에 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권하고, 이를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보도하는 '데즈닉(Desnick)' 사례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 음주단속을 벗어나기 위한 부조리를 고발하는 '정○○' 사례에서의 사용 등은 공익성이 인정된 경우이다. 단순한 '공적인 문제' = '알 권리 충족'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활동은 취재대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공익적 근거를 가질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즉, 몰래카메라로 인해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보다 얻게 되는 정보가 현저하게 큰 가치를 가져야 한다.

둘째, 동일한 정보를 얻기 위한 대체 취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어야 한다. 몰래카메라가 아닌 다른 유형의 취재방법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복수의 정보원이 있고, 그들과의 인터뷰 내지는 심층 취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도, 굳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강령에 따른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정상적인 언론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목적, 마감시간의 압력, 사용된 정보원과 보도 내용의 신뢰성 등에 따라 따져볼 수 있다.²¹⁾ 즉, 몰래카

20) <그림1> 참조.

21)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and Associated Press v. Walker, 376 U.S. 254 (1964).

메라의 사용이 필요한 성격의 프로그램인지, 마감시간의 압력에 쫓기는 상황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지,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원이 신뢰할 만한지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윤리강령을 준수한 행위인지도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언론사는 윤리강령으로 취재보도의 기준·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을 전면 위반하면서까지 몰래카메라가 동원되었다면, 이를 상쇄할 지대한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언론사가 패소한 사례들의 대부분은 결국 정상적인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로부터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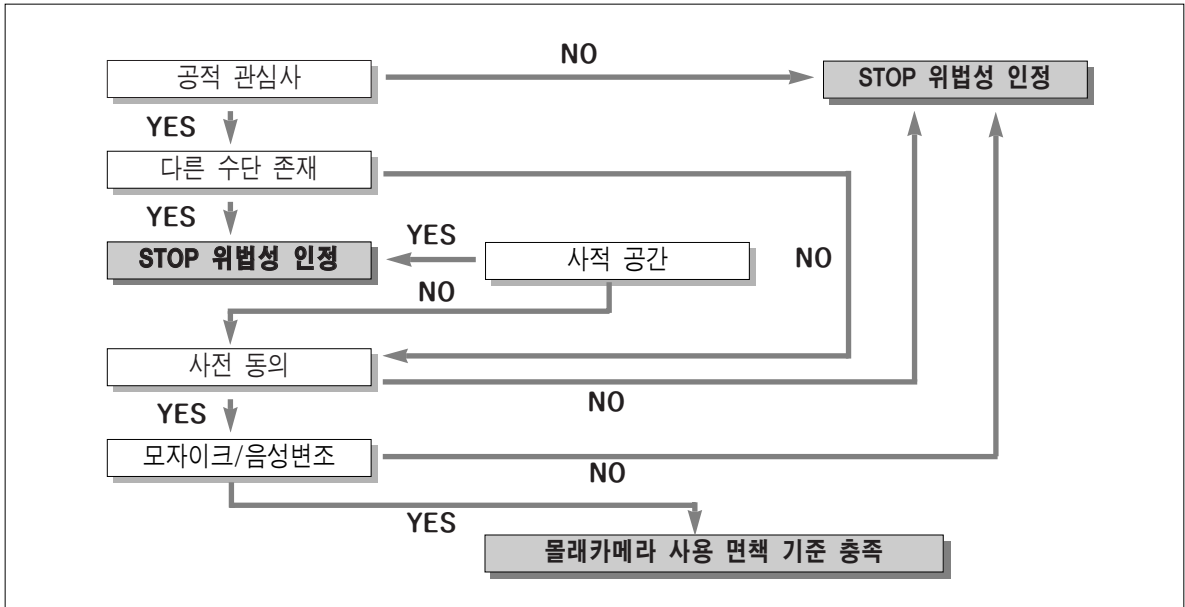
넷째, 사전 동의 범위 내에서 취재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대부분의 취재는 취재대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취재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요건을 구성할 뿐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 동의를 따르는 것이 옳다. 취재 범위와 방향 등을 사전에 약속한 이상 이를 지키는 것이 언론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고,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사전 동의를 파괴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취재대상의 의사와 반하게 실명이나 신상에 관한 개인적 문제를 노출시킨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성은 인정될 수 없다. '성○○ 대 MBC', '박○○ 대 김종학프로덕션', '김○○ 대 KBS', '김○○ 대 MBC' 등 다수의 한국사례들은 사전 동의에 따른 취재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 연습실 등과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서는 높은 정도의 사생활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촬영은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옳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작업장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이트맨 대 타임' 사례와 '샌더스 대 ABC', '최○○ 대 SBS'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면허 의료시술과 불법 레슨이 이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이 강하게 보장되는 사적공간에서의 불법 취재보도 행위는 용인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전 동의를 전제로 촬영, 보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재대상에 대한 익명보장을 해야 한다. 사실 몰래카메라의 이용 자체가 촬영·작성 거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방영은 공표거절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취재된 내용의 방송 여부와 상관없이 취재과정에서 이미 프라이버시나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성변조, 모자이크, 앵글처리 등의 방법으로 취재대상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사전 동의에 모자이크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기술적 처리를 통한 익명성 보호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외주제작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최종편집 권한이 방송사에 있는 만큼, 인격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김○○ 대 KBS' 사례와 '박○○ 대 김종학 프로덕션' 사례에서 법원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를 초상권 침해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운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1〉 몰래카메라 허용 기준 개요도



5. 맺는 말

몰래카메라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주요한 취재 수단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윤리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취재보도 할 필요가 있다. 또 윤리강령과 취재준칙에 준거해서 충실하게 정보를 습득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인은 취재대상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알 권리 충족만큼이나 중요한 임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언론윤리학자인 밥 스틸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²²⁾

몰래카메라는 “적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보도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등, 국민 이익과 직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몰래 카메라의 사용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보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도저히 획득할 수 없거나 그런 가능성이 없을 시, 보도 방법의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속임수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려는 뉴스 기관은 가장 엄격한 규범을 만족시킬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 스틸의 기준은 〈그림1〉에서 제시된 기준과 함께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윤리적 한계와 허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

22)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김경호 역(2008). 저널리즘과 진실, 이상한 동거. 32페이지 참조.

〈참고문헌〉

- 김경호 (2003).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형.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246~273쪽.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재단 (2000). 언론인의 직업윤리: 책임 언론을 위한 현실 점검과 대안 모색. 서울: 한국언론재단.
- Boylan, J. (1997). Punishing the press: The public press some tough judgments on libel, fairness, and fraud. *Columbia Journalism Review*, (Mar./Apr.), 35, 24.
- Goldstein, T. (2007). *Journalism and Truth: Strange Bedfellow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김경호 역(2008). *저널리즘과 진실, 이상한 동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Epstein, R. A. (2000). Privacy, publication, and the First Amendment: The dangers of First Amendment exceptionalism. *Stanfaord Law Review*, 52, 1003~ 1047.
- Kim, G. H. (2001). Media liability for surreptitious and other intrusive newsgathering practic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 Lidsky, L. B. (1998). Prying, spying, and lying: Intrusive newsgathering and what the law should do about it. *Tulsa Law Review*, 73, 173~249.
- Logan, D. A. (1998). Masked media: Judges, juries, and the law of surreptitious newsgathering. *Iowa Law Review*, 83, 161~229.
- Nick, D. (1999). Food (Lion) for thought: Does the media deserve special protection against punitive damage awards when it commits newsgathering torts? *Wayne Law Review*, 45, 203~236.
- Stewart, P. (1975). Or of the press. *Hastings Law Journal*, 26, 631~637.
- Walsh, J. J., Selby, S. J., & Schaffer, J. L. (1996). Media misbehavior and the wages of sin: The constitutionality of consequential damages for publication of ill-gotten information.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4, 1111~1144.
-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 193~220.